

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 김태수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 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.

○ 이에,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○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
부탁드립니다.

○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